

- 대구광역시달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-

제 안 설 명 서

2024. 11.



대구광역시 달서구

<http://www.dalseo.daegu.kr>

[기획전략과]

제 안 설 명 서

설 명 자: 기획전략과장

「대구광역시달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」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.

□ 먼저, 제안이유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면,

- 달서평생학습관 확대 개관, 체계적인 소상공인 지원 등 변화하는 행정환경에 맞춰 행정기구 및 사무를 조정하여 합리적·능동적인 조직기반을 마련하고자 본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합니다.

□ 다음은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.

- 고물가·고금리 등 어려운 지역경제 회복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경제지원과에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사무를 명시화하고, (안 제6조)
- 달서구 평생학습의 컨트롤타워 기능을 수행할 “달서평생학습관”이 내년 상반기 확대 개관 예정에 따라 구민의 학습 욕구 충족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발굴 및 운영 등을 위한 학습관운영에 관한 사무를 명시화 하였습니다. (안 제7조)
- 또한, 경제지원과의 창의발명업무는 평생교육과로 이관하여 우수한 학생들이 미래를 이끄는 창의인재로 성장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는 등 부서간 일부 사무를 조정하였습니다. (안 제6조 ~ 제7조)

개정조례안에 대한 사전 조치사항으로

- 본 조례안을 2024년 10월 21일부터 10월 31일까지 입법예고하여 의견을 수렴한 결과 제출 의견은 없었으며,
- 2024년 11월 5일 조례·규칙심의회를 거쳐 구의회에 제출하게 되었습니다.

본 조례 개정에 따른 비용추계는

- 「대구광역시달서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」 제3조제5항제2호에 따라 비용추계서 작성을 생략하였습니다.

앞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

- 구 주요 현안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행정환경 변화에 따른 효율적인 조직운영을 도모하고자 하오니,
- 본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.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.

감사합니다.

대구광역시달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00924114
----------	----------

제출년월일: 2024. 11. 6.
제출자: 달서구청장
(기획전략과장)

1. 제안이유

- 달서평생학습관 확대 개관, 체계적인 소상공인 지원 등 변화하는 행정환경에 맞춰 행정기구 및 사무를 조정하여 합리적·능동적인 조직기반을 마련하고자 조례를 일부개정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- 가. 업무이관에 따른 분장사무 조정 (안 제6조)
 - “창의발명” 업무: 경제지원과 → 평생교육과
- 나. 그 밖에 분장사무 정비 (안 제6조 ~ 제7조)
 - “소상공인 지원”, “평생학습관 운영” 업무 명시화

3. 개정조례(안): 따로 붙임

4. 신·구조문 대비표: 따로 붙임

5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
 - 1) 「지방자치법」 제125조
 - 2) 「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」 제13조
- 나. 예산조치: 별도조치 필요없음
- 다. 기타사항
 - 1) 입법예고(2024. 10. 21. ~ 10. 31.)결과: 의견 없음
 - 2) 규제심사: 해당사항 없음
 - 3) 비용추계서: 해당없음
 - 4) 부패영향평가 검토 결과: 원안 동의
 - 5) 성별영향평가 검토 결과: 원안 동의
 - 6) 조례·규칙 심의 결과: 원안 가결

대구광역시달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대구광역시달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6조제2항제5호 중 “경제정책·기업지원·창의발명·유통지원·동물관리”를 “경제정책·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·유통지원·동물관리”로 한다.

제7조제2항제2호 중 “평생교육·교육지원·독서진흥·도서관”을 “평생교육·창의교육지원·평생학습관 운영·독서진흥·도서관”으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6조(기획경제국) ① (생략)</p> <p>② 기획경제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.</p> <p>1. ~ 4. (생략)</p> <p>5. <u>경제정책·기업지원·창의발명·유통지원·동물관리</u> 등에 관한 사항</p>	<p>제6조(기획경제국) ①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----- -----.</p> <p>1. ~ 4. (현행과 같음)</p> <p>5. <u>경제정책·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·유통지원·동물관리</u> ----- -----</p>
<p>제7조(행정교육국) ① (생략)</p> <p>② 행정교육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.</p> <p>1. (생략)</p> <p>2. <u>평생교육·교육지원·독서진흥·도서관 관리 및 운영</u> 등에 관한 사항</p> <p>3. ~ 6. (생략)</p>	<p>제7조(행정교육국) ①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----- -----.</p> <p>1. (현행과 같음)</p> <p>2. <u>평생교육·창의교육지원·평생학습관 운영·독서진흥·도서관</u> ----- -----</p> <p>3. ~ 6. (현행과 같음)</p>

【 관 계 법 령 】

□ 지방자치법

제125조(행정기구와 공무원)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 기구와 지방공무원을 둔다.

② 제1항에 따른 행정기구의 설치와 지방공무원의 정원은 인건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

③ ~ ⑥ (생략)

□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

제13조(시·군·구의 기구설치기준) ① 시·군·구 본청의 실·국이나 과·담당관과 자치구가 아닌 구의 과·담당관의 설치에 관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되, 인구 30만명 이상인 시·군·구는 「공공감사에 관한 법률」 제5조에 따른 자체 감사기구를 두어야 한다. <개정 2018. 2. 20., 2024. 3. 29.>

② 시·군·구 본청의 실장·국장과 과장·담당관의 직급과 실·과·담당관의 사무분장 등에 관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.

③ 특별시장·광역시장·도지사·특별자치도지사(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)는 관할 시·군·구 조직간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하여 기구의 설치·운영에 관한 지침을 작성하여 시장·군수·구청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. <개정 2012. 6. 29., 2020. 3. 10., 2024. 1. 16.>

④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실·국과 실·과·담당관의 명칭과 사무분장을 시·도와 시·군·구간 사무의 연계성과 그 기능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정하여야 한다.